

우리 나라 學校保健事業 變遷에 關한 研究

金 相 煜

文敎部普通敎育局 義務敎育科 保健係長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學校保健의 初期에는 學校保健事業이 傳染病管理를 主要事業으로 展開해 왔으나, 學校保健事業도 한 社會가 取하고 있는 保健醫療制度의 性格과 時代의 要求에 의해 變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 英國과 같은 社會保障型 保健醫療制度를 運營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傳染病 管理 爲主에서 學校給食과 保健敎育을 中心으로 學生의 自己健康管理 (self-care) 能力을 向上시켜 國民의 健康을 維持·增進시키는 方向으로 學校保健事業을 實施해 왔으며,²⁾ 蘇聯과 같이 共產主義型 保健醫療傳達體系를 運營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傳染病 爲主의 學校保健事業에서 保健敎育 爲主의 것으로 轉換하여 國民의 自己健康管理(self-care) 能力을 向上시키는 方向으로 學校保健事業을 展開해 왔다.³⁾

美國 등과 같이 自由企業型 保健醫療傳達體系를 運營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傳染病 爲主의 學校保健事業이 身體檢査 爲主로 發展하면서 保健敎育이 度外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⁴⁾

이들에 比하여 우리나라의 學校保健事業을 살펴 보면, 美國, 日本 등과 같이 自由企業型 保健醫療傳達體系를 運營하고 있어 傳染病 爲主에서 身體檢査 爲主로 學校保健事業이 發展해 왔음을 1951年 身體檢査 規則이 우리나라 政府의 意志로 처음 制定된 學校保健 關聯法規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美國과 같이 身體檢査 爲主로 學校保

健事業을 展開하여 왔던 나라들도 保健敎育課程을 통한 學校保健事業이 自己健康管理(self-care) 能力을 向上시키는데 가장 效果의이며 效率의인 事業이라는 것이 立證되어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제 우리나라도 學校保健敎育課程을 통하여 國民의 自己健康管理(self-care) 能力을 向上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學校保健事業의 方向을 轉換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學校保健의 概念을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保健事業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學校保健事業과 다른 하나는 敎育課程으로서의 學校保健事業이다.⁷⁾

여기에서는 後者の 概念에서, 學校라는 地域社會가 갖는 固有의 目標 내지는 特殊性이 보다 強化된 形態로 學校保健事業을 學校의 敎育課程으로 理解하자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1910년에 美國體育敎育協會가 學校保健과 體育敎育이라는 主題로 열린 學術大會에서 保健敎育과 體育敎育을 分離시킬 것을 決定한 바 있다.⁸⁾

우리나라도 學校保健 初期에는 健康이라는 敎科를 分離하여 가르치도록 하였으나, 1963年 2월에 이를 廢止하고, 體育敎科의 한 部分으로 統合시켰다.⁹⁾

學校保健事業을 하나의 敎育課程이라는 틀속에서 보면, 保健敎育이 獨立된 敎科로서 그 內容과 體系가 갖춰져야 한다는 方向轉換의 必要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學校保健專門家들의 報告가 繼續 이어지

고 있다.

그러므로 學校保健 教育이 教育課程의 範疇 속에서 自己位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學校保健 事業을 理解해야 한다.

이에 本 研究는 學校保健事業을 形成해 온 背景과 一定한 觀點의 變化 및 그 흐름을 살펴보면 學校保健 事業이 指向해야 할 位相과 座標를 提示해 보고자 한다.

本 研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學校保健의 初期부터 오늘까지 展開해 온 學校保健 事業을 年代的으로 比較 分析함으로써 學校保健 事業의 發展의 人脈絡을 糾明하고 이를 통하여 現代가 指向하는 保健教育 課程으로서의 學校保健 事業 方向을 定立하고자 한다. 이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內容을 年代順으로 分析한다.
2. 이들 學校保健事業 內容을 뒷받침하기 위한 法, 行政組織, 人力, 民間組織을 把握한다.
3. 學校保健事業의 年代的 變化에 따른 學校保健 理論을 分析한다.
4. 學校保健事業 方向을 提示한다.

II. 研究方法

1. 研究資料

本 研究의 資料는 學校保健 事業의 主體인 文教部, 市·道教育委員會에서 發行한 各種 刊行物과 學界에서 研究 發表한 論文들이었다. 이를 具體的으로 보면

- ① 1971년부터 1989년까지 文教部가 每年 提示해 왔던 學校保健管理指針(基準)
- ② 1953년부터 1989년까지의 文教關係 法令集 15 卷
- ③ 文教部가 發行한 文教教育史 및 各 市·道教育委員會가 發行한 教育史 11卷
- ④ 學校保健協會 資料
- ⑤ 學校保健關係 公式 非公式 書類

⑥ 各種 學校保健關係册과 研究資料이다.

2. 資料分析

우리나라 學校保健 시초로 判斷될 수 있는 事業目的이나 內容을 各種 資料에서 分析하고 그 時點을 基點으로 하여 學校保健事業의 展開를 年代順으로 事業內容別로 整理하였다. 整理된 學校保健事業 內容들은 그 當時에 學校保健에 關聯된 法, 行政組織, 人力資源들과 連繫하여 分析되었다. 특히 人力資源은 學校保健에 常勤 教師인 養護教師의 分布와 補修教育課程이 時代別 學校保健事業과의 關聯을 分析하고, 解釋하였다. 이러한 分析結果를 中心으로 우리나라가 指向해야하는 學校保健事業을 社會變化에 따라 學校保健의 理論과 實際의 模型을 提示하려 하였다.

III. 研究結果

우리 나라 學校保健事業의 變遷에 대한 分析을 學校保健 事業內容, 學校保健을 支援하는 學校保健 行政으로 區分하여 試圖하였다.

1. 學校保健事業內容

學校保健事業內容은 學生의 身體檢査 및 健康管理, 養護室運營管理, 保健教育學校環境衛生管理이다.

1) 學生의 身體檢査 및 健康管理

學生의 健康狀態를 把握하여 適切한 健康管理을 하기 위한 目的으로 實施해온 學生의 身體檢査 및 健康管理은 우리나라 學校保健의 初期부터 이루어졌다(表1 參照)

本 研究에서 蒐集된 學校保健管理基準(指針)에서 1971년부터 오늘까지 每年 實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健康管理을 위한 各種 檢査로 身體檢査, 血液型 檢査, 寄生蟲檢査, 結核檢診, 尿檢査 등을 實施하였는데, 특히 身體檢査는 體格檢査, 體質檢査, 體

力檢査를 實施하였으며 이중 體力檢査는 1980年 學校保健에서 學校體育으로 分離되어 體育과 保健이 自然스럽게 分離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血液型檢査는 國民學校 1學年 및 初·中·高의

在學生中 未檢者를 對象으로 ABO 類型만 檢査하다가 1974年부터 RH(-) 反應檢査를 並行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檢査料는 1人當 300원을 國庫에서 支援하고 있다.

〈表 1〉

年度別 學生의 定期 身體檢査

| 年度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體格檢査 | | | | | | | | | | | | | | | | | | | |
| 體質檢査 | | | | | | | | | | | | | | | | | | | |
| 體力檢査 | 別途 體力 檢査 實施 要領 | | | | | | | | | 學校 體育 管理 指針 으로 分離 | | | | | | | | | |

寄生蟲檢査는 1986년까지 全國의 初·中·高 學生全員을 對象으로 1年에 2回 實施하여 오다가 1987年부터는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을 區分하여 檢査回數를 區別하고 있으며 檢査結果의 處理도 1980年度부터 有所見者에게만 無料로 投藥하고 1人當 80원을 國民學校는 國庫에서 中等學校는 學校自體 育成會經費에서 支援하고 있다.

尿檢査는 1980년부터 中·高 3學年 在學生을 對象으로 糖과 蛋白尿檢査를 實施하여 오다가 1985年부터 檢査對象者를 國民學校 6學年在學生을 더 追加하여 實施하고 있는데 手數料는 現在 210원을 國

民學校는 國庫에서 中等學校는 育成會經費에서 支援하고 있다.

結核檢診과 管理는 우리나라 初期부터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데 國民學校는 6學年 在學生中 P. P. D. 檢査에 以上이 있는 學生만 X-線檢診을 하고 中·高 1學年을 對象으로 X-線檢診을 한 후 結核患者로 確診된 경우 地域의 保健所와 連繫하여 管理하고 있으며 手數料는 1人當 550원을 國民學校는 國庫에서 中等은 育成會經費에서 支援해 주고 있다.

口腔保健管理는 定期身體檢査時 口腔의 健康狀態

를 把握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學校齒科醫를 委嗤하여 口腔管理를 徹底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1980년부터 保健教育을 強化하고 또 示範事業을 展開하였다. 1985년에는 口腔保健管理를 위한 校長과 養護教師 研修가 實施되기도 하였다.

以上の 學生健康管理 위한 體格檢査, 體質檢査, 各種檢査는 年度가 달라지면서 檢査의 對象, 回數, 檢査費등이 그 時代에 맞도록 變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中 體質檢査는 各 學校의 校醫나 一般醫師에 委嗤하여 一般的으로 5月~6月 동안에 많은 學生을, 짧은 期間에 聽診器 程度의 器具로 檢診을 하도록 되어 있는 制度에 많은 矛盾이 露出되어 오고 있다.^{10), 11)} 이의 是正으로 여러가지 研究事業이 進行되고 있으며 특히 養護教師에 의한 1次 健康查定後 2次로 醫師에게 醫學的 診斷을 받도록 하면 매우 效果的이라는 研究들이 繼續 發表되고 있다.¹²⁾

2) 養護室 運營管理

學校保健에 있어서 養護室은 學校保健事業의 中心處이다. 養護室 運營管理를 통한 學生의 健康管理는 養護室 記錄管理(學生健康記錄簿 및 諸帳簿), 豫算, 養護室規模, 養護室設備基準, 救急藥 및 治療用 材料등으로 區分, 年度別 比較分析하였다 (表 3, 4, 5 參照).

學生의 健康記錄簿는 20餘年동안 學生 1人當 1部를 作成하여 養護教師 責任下에 保管하도록 提示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豫算은 保健管理費, 養護室設置費, 施設裝備 및 藥品費등으로 區分되며 1980年度부터 學校保健管理指針에 具體的인 豫算을 提示하고 있어 學校保健의 豫算確保를 위하여 努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養護室規模에 대한 關心도 1984년부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表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 養護室設備基準과 救急藥 및 材料具備에 대한 內容을 學校保健管理指針에 插入하여 全國의 學校에 提示하고 이를 基礎로 養護室을 運營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4년에 養護室 設備基準中 몇가지 內容이 追加되었을 뿐 10년이 지나는 동안 變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學生의 健康管理를 위한 手段으로 養護室의 維持 및 管理는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1980년이 되어서야 學校保健管理指針에 養護室 設備 및 運營에 대한 內容 掲載되어 學校保健의 基本構造를 갖추는데 매우 뒤져있음이 나타났다.

年度別 養護室 运营管理

(表 3)

| 年 度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記録 學生健康記録簿 | 1人1部 作成保管 | " | " | " | " | 1人1部 養護教師 責任下 保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豫算 保健管理費 | 學級當 1,800 円 | " | " | " | " | " | " | " | " | 校當 300,000 735 校 | 校當 350,000 735 校 | 校當 400,000 700 校 | " | " | 校當 500,000 100 校 | " | 總 97,428,000 | 100,600,000 | 116,882,000 |
| 養護室設置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施設裝備藥品 | " | " | " | " | " | 市道教委 別 | " | " | " | " | " | " | " | " | " | " | 身體検査機器 校當 300,000 (100 校) | " | " |
| | " | " | " | " | " | " | " | " | " | 養護室 設備基準 | " | " | " | " | " | " | 消毒藥品校當 4,300 (100 校) | " | " |
| | " | " | " | " | " | " | " | " | " | 救急藥具 救急治療用 材料 | " | " | " | " | " | " | " | 養護室設備 基準救急藥 具救急治療 用材料 | " |
| 養護室規模 | " | " | " | " | " | 既存教師 空間活用 | " | " | " | " | " | " | " | 一般教室 66 m ² | " | " | " | " | " |

<表 4>

年度別 養護室 設備基準

(6 學級 360 名基準)

| 品 名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事務用册床 및 椅子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긴 椅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寢 臺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가리개 (2쪽) 커튼 (窓門數만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스 폰 지 櫃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거 즈 櫃 | 2 | 2 | 2 | 2 | 2 | 2 | 2 | 1 | 2 | 2 |
| 쓰레기櫃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寒暖計(溫·濕度計)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鉗子(포셀)긴것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 鉗子有鉤(中)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鉗子無鉤(中) | 2 | 2 | 2 | 2 | 2 | 2 | 2 | 1 | 2 | 2 |
| 달 것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洗眼수수기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膿 盤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器械받트(4,6 G)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聽診器(國產)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 血壓計(野戰用) | 1 | 1 | 1 | 1 | 1 | 1 | 1 | 2 | 2 | 2 |
| 가 위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止血鉗子 | 2 | 2 | 2 | 2 | 2 | 2 | 2 | 1 | 2 | 2 |
| 시침기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판셀櫃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器具櫥(캐비닛)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베개, 노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얼음주머니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플래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술 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止血帶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副 木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洗眼瓶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舌壓子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體溫計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縫合針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注射器(5CC)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注射器(21 KG)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縫合針(3)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遮眼器 | | | | | 1 | 1 | 1 | 1 | 1 | 1 |
| 照度計 | | | | | 1 | 1 | 1 | 1 | 1 | 1 |
| 殘留鹽素測定器 | | | |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弗素溶液養齒事業器材 | | | |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1 組 |
| 騒音測定器 | | | | | 1 | 1 | 1 | | | |

* 身體檢査用器材, 洗眼用器具는 學校에 備置된 것으로 看做

(表 5)

年度別 救急藥 및 救急治療用材料

(360名基準)

| 品 名 | 年 度 | | | | | | | | | |
|-----------------------------|------------------------------------|-----|-----|-----|--------------------|-----|-----|-----|-----|-----|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繃 帶(4인치) | 3 箱 | 〃 | 〃 | 〃 | 〃 | 〃 | 〃 | 〃 | 〃 | 〃 |
| 솜 | 3몽치 | 〃 | 〃 | 〃 | 〃 | 〃 | 〃 | 〃 | 〃 | 〃 |
| 絆倉膏(大) | 2 | 〃 | 〃 | 〃 | 〃 | 〃 | 〃 | 〃 | 〃 | 〃 |
| 絆倉膏(小) | 100 | 〃 | 〃 | 〃 | 〃 | 〃 | 〃 | 〃 | 〃 | 〃 |
| 消化劑(定) | 600 | 〃 | 〃 | 〃 | 〃 | 〃 | 〃 | 〃 | 〃 | 〃 |
| 止瀉劑(定) | 600 | 〃 | 〃 | 〃 | 〃 | 〃 | 〃 | 〃 | 〃 | 〃 |
| 解 熱 劑 | 1,200 | 〃 | 〃 | 〃 | 〃 | 〃 | 〃 | 〃 | 〃 | 〃 |
| 消毒液 (하이진, 벤잘페움 크로라이트) | 1 | 〃 | 〃 | 〃 | 〃 | 〃 | 〃 | 〃 | 〃 | 〃 |
| 안티푸라민 | 1 | 〃 | 〃 | 〃 | 〃 | 〃 | 〃 | 〃 | 〃 | 〃 |
| 푸라진軟膏 | 1 | 〃 | 〃 | 〃 | 〃 | 〃 | 〃 | 〃 | 〃 | 〃 |
| 抗生劑軟膏 (15 g 1m) | 5 | 〃 | 〃 | 〃 | 〃 | 〃 | 〃 | 〃 | 〃 | 〃 |
| 抗生劑眠軟膏 (3.5 g 1m) | 5 | 〃 | 〃 | 〃 | 〃 | 〃 | 〃 | 〃 | 〃 | 〃 |
| 算出根據 | 患者 0.2% 授業 日 數 300日 | 〃 | 〃 | 〃 | 患者 0.2% 220日 | 〃 | 〃 | 〃 | 〃 | 〃 |

3) 保健教育

學生이 自己健康管理를 스스로 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기 위한 目的으로 實施해온 保健教育事業은 1979년까지 安全教育이라는 題目으로 이루어 지다가 1980년부터 保健教育으로 表記되었으며 學校保健管理指針에 保健教育에 대한 時間, 方法等이 具體적으로 提示되고 強化된 時期가 1980년부터 임을 알 수 있다. 1984년에는 體育時間에 保健教育

이 疏忽히 되지 않도록 初·中·高의 體育教科에 保健內容分布를 具體적으로 提示하기도 하였다. 이 와 때를 같이하여 1958년에는 서울大學校 保健大學 院 主催로 養護教師職務 및 職務本位 教育課程 開發을 文敎部와 W.H.O. 後援下에 始作하게 되어 學校保健事業의 方向을 一次保健醫療를 基礎로한 學校保健教育課程으로 轉換시키는 契機를 學校保健行政家나 養護教師등 學校保健關係者 모두에게 마련

해 주어 學校保健의 方向을 새롭게 접근하게 되기도 하였다. (13, 14).

이러한 學校保健事業의 흐름속에서 1987年 1월에 文教部에서는 全國의 3個地域(서울, 全北, 慶北)國民學校에 學校一次保健醫療 研究開發과 關聯 敎育委員會 主管으로 各 1個校(서울 三隆國民學校, 全北 新安城國民學校, 慶北安康國民學校)씩 2年次 示範運營토록 豫算措置 및 行政支援 하였으며(15) 文教部는 1988年 大田市 文化國民學校에 이와 關聯한 養護敎師 職務開發을 위한 文教部指定 示範研究學校를 2年次 指定함으로써 學校保健敎育 領域의 示範學校가 最初로 登場하게 되고(16),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每年 保健示範學校를 擴大할 것을 計劃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7年 서울市敎育委員會가 養護敎師 1人當 1週에 6時間의 保健敎育을 正規敎科時間에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一線 敎育行政家들이 保健敎育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는 時代의 要求를 잘 反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7).

學界에서는 學校保健學會가 1987年 創立되어 學校保健關係者의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學會도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方向 定立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1989년에는 文教部가 學校保健敎育研究示範學校로 京畿道 水原市 서호國民學校를 指定 運營하기에 이르렀다(18) (表 6參照).

특히 本 研究 示範學校는 學校保健事業을 學校保健敎育 過程으로 轉換시켜 學校保健敎育課程內에 學生健康管理, 環境衛生管理, 保健授業을 包含하고 이들을 學生의 健康管理能力 本位 敎育課程으로 開發하도록 計劃하고 있다.

4) 環境 衛生管理

學校의 環境衛生管理와 學校周邊環境淨化管理로 區分된다(表 7, 8參照).

校內 環境衛生管理는 給水衛生管理 學校消毒, 敎室照明度管理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校內環境衛生管理中 給水衛生이 제일 重要時 取扱되어 學校

保健의 初期부터 水質檢査와 消毒을 主事業內容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上水道 普及率과 關聯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1977년에는 1個月에 2回, 1980년에는 月 1回등 具體的으로 給水 衛生管理를 強化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5년에는 養護敎師에 의한 自體水質檢査를 行政的으로 指示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學校의 消毒은 1980년부터 具體的으로 提示, 強化되었으며 敎室照明度管理는 1985년에 實施되기 시작하였다.

校內 環境衛生管理는 우리나라의 環境衛生管理水準과 軌를 같이하여 發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校周邊環境淨化는 學校保健의 初期부터 重要視되어 環境衛生淨化區域 設置를 規定하여 敎育의 障礙要因을 除去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學校保健事業의 年度別 事業內容變化를 要約하면 1980년에 學生의 定期 身體檢査中 體力檢査가 除外되어 學校體育과 學校保健과의 分離를 알 수 있었으며 口腔保健 및 示範事業이 始作되었고 學生의 健康觀察 및 健康相談에 대한 行政指示가 強化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養護室 運營管理에 대한 豫算, 施設, 救急藥의 強化가 1980년부터 始作되었으며 특히 寄生蟲藥 投藥도 有所見者에 限하여 實施하도록 方向轉換을 한 時期도 1980年이었음이 나타났다.

保健敎育도 1980년부터 保健敎育이라는 主題로 敎育되기 始作하였으며 1984년에는 初·中·高의 體育敎科에 保健內容分布가 具體的으로 提示되었고 1987年 文教部에서 一次保健醫療研究開發과 關聯한 3個地域 市·道敎育會 主管의 示範學校運營 指示, 서울市 敎育委員會의 正規敎科時間에 養護敎師로 하여금 週當 6時間의 保健敎育 實施措置, 1988年 文教部의 養護敎師 職務開發을 위한 示範學校 指定 및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保健示範學校運營計劃 反映, 1989년에는 文教部指定 學校保健敎育研究 示範學校 運營 등은 學校保健敎育의 重要性이 繼續

強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學校環境衛生管理도 1979년부터 學生保健法 改正準備를 始作으로 從前 學校保健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 施行令 第3條에 明示된 淨化區域은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市地域에 있어서는 學校로부터 300 m 其他地域에서는 200 m까지의 地域으로 이던 것을 現在의(1981年改正) 學校保健法 및 同法施行令과 같이 絶對淨化區域(學校出入門으로부터 直線距離 50 m 地點)과 相對淨化區域(學校 境界線으로부터 絶對區域을 除外한 200 m까지)으로 改正하여 具體적으로 提示되어 強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從前에는 淨化區域 안에서의 禁止行爲도 學校保健法 施行規制에 明示하던 것을 改正 學校保健法에서는 第6條에 禁止行爲 및 施設을 明示하여 크게 補完하고 同法 施行規則을 廢止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學校保健事業은 우리나라의 初期부터 繼續 發展되어온 痕跡이 年度別 事業內容의 分析에서 나타나 있으며 특히 1980年度를 基點으로 學校保健事業이 全般的으로 擴大 強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985年 研究開發事業의 推進으로 學校保健事業을 위한 理論的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始作하였다. 또 한 1989년에 이르러 保健事業의 範圍에서 이루어졌던 既存의 學校保健事業을 學校의 教育事業 즉, 學校保健教育課程으로 方向轉換을 試圖하는 研究示範 學校를 運營하게 되었다. 이는 學校保健의 劃期的인 發展을 나타낸 結果라고 볼 수 있다.

年度別 學校環境衛生管理

(表 7)

| 年度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
| 給水衛生管理 | 年1回以上 水質検査 | " | " | " | " | " | 1個月、2回 水質検査 農村學校 | " | " | 井戸水検査 月1回 井戸水消毒 | " | " | " | 簡易水道 年2回以上 検査 | 水質測定機 利用 自體水質検査 査：養護 教師 | " | " | " | " | " | |
| 學校周邊消毒 | 消毒 | " | " | " | " | " | " | " | " | 教室、册床 防疫消毒 | " | " | " | " | 學校環境 食品衛生 適正維持基 準を調査 方法 | 教室、册床 防疫消毒 便所、下水 口、トイレ 場 消毒 | " | " | " | " | |
| 教室照明度管理 | 便所、汚物處 理場、下水口 等、學校周邊 清潔 | " | " | " | " | " | 騒音、振動 器具除去 | " | " | " | " | " | " | " | " | " | " | " | " | " | 照度測定 實施 |

年度別 學校周邊環境淨化

〈表 8〉

| 年度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設定 | 시읍市, 鎭 山市地域 300 m 邑, 面地域 200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淨化區域 設定公告時 官報掲載 | " | " | |
| 學校周邊環境淨化 | | | | | | 未設定校 或新設校 | 未設定校 或新設校 '77.3.1 | 未設定校 或新設校 '78.3.1 | 新設校之 校地確定 後 1個月 以內 設 定公告 | 學校保健 法 施行 規則 3條 定期點檢 | " | 學校保健 法 同法 實施令 81 年改正公 布依據 再 設定公告 1市・郡區 分界의 200 m 로 하고 絕對淨化 區域과 相對區域으 로 區分) | " | " | " | " | " | 新設校之 建築竣工日 로부터 2個 月以內 設 定公告 | " | |
| 事後管理 (學校環境衛生 淨化措置) | 學校保健法 6條 2項에 依據 | " | " | " | " | " | " | " | " | 學校保健 法 施行 規則 3條 定期點檢 | " | " | " | 學校保健法 施行令 3條 의 2 學校 保健去 6條 | " | " | " | " | " | |
| 學校環境衛生 淨化委員會 (事前規制) | 運營：市・ 道教委의 條例・規則 * 審議內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審議基準 整備 |

* 審議內容：淨化區域內에서 學習에 支障이 되는 行爲 및 學校區域內에서 影響을 끼치는 非衛生的인 施設 및 行爲 의 禁止 및 豫防, 其他 學校環境淨化에 必要한 事項.

2. 學校保健行政

學校保健事業內容을 支援하기 위한 學校保健行政을 文敎부와 市·道敎育委員會의 組織과 學校保健關係法의 時代的 變化와 關聯하여 分析하였다.

1) 學校保健 行政機構

文敎부의 學校保健에 關한 行政組織 改編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12회이었다(圖表 1參照).

圖表 1에서와 같이 學生保健은 學校體育의 下位租織으로 우리나라 初期부터 存在하여 오다가 1982年 3월부터는 義務敎育 下位體系로 學校保健組織이 位置하고 있다. 이는 學校保健의 敎育界에서 位置이 定立되어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즉 學校保健이 體育敎育인지 혹은 義務敎育인지 概念이 定立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位置도 어느 水準이어야 하는지 그 方向도 流動的이다.

1979年 3月 처음으로 學校保健이 課의 水準으로 改編되었다가 1981年 10月 불과 2年 6個月만에 廢止되었다. 이후 學校保健은 縮小되었다가 1987年 1月부터 學校保健을 “係” 水準에 머물게 되는 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市·道敎育委員會는 1979年 保健係가 設置된 以後 改編되지 않고 그대로 維持되어 學校保健이 退步되지 않는다고(圖表 2參照).

以上的 學校保健 行政機構를 볼 때 1979年이 文敎부와 市·道敎育委員會는 學校保健을 위하여 重要한 時點이었으며 이때부터 學校保健事業이 劃期的으로 發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學校保健法

우리나라 政府가 最初로 學校保健에 關한 法을 制定한 것은 1951年 學校身體檢査規則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49年에 制定된 敎育法에 學校保健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 있었으나 이는 學校保健에 關한 單獨法은 아니었다. 1967年 學校保健法이 1969年에는 同施行令이 制定된 것은 學校保健이 敎育界에 뚜렷이 存在하는 根據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67年에 制定된 學校保健法은 既存의 學校保健事業內容을 包括하고 이 事業을 發展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學校保健人力의 配標基準을 提示하고 있다(圖表 3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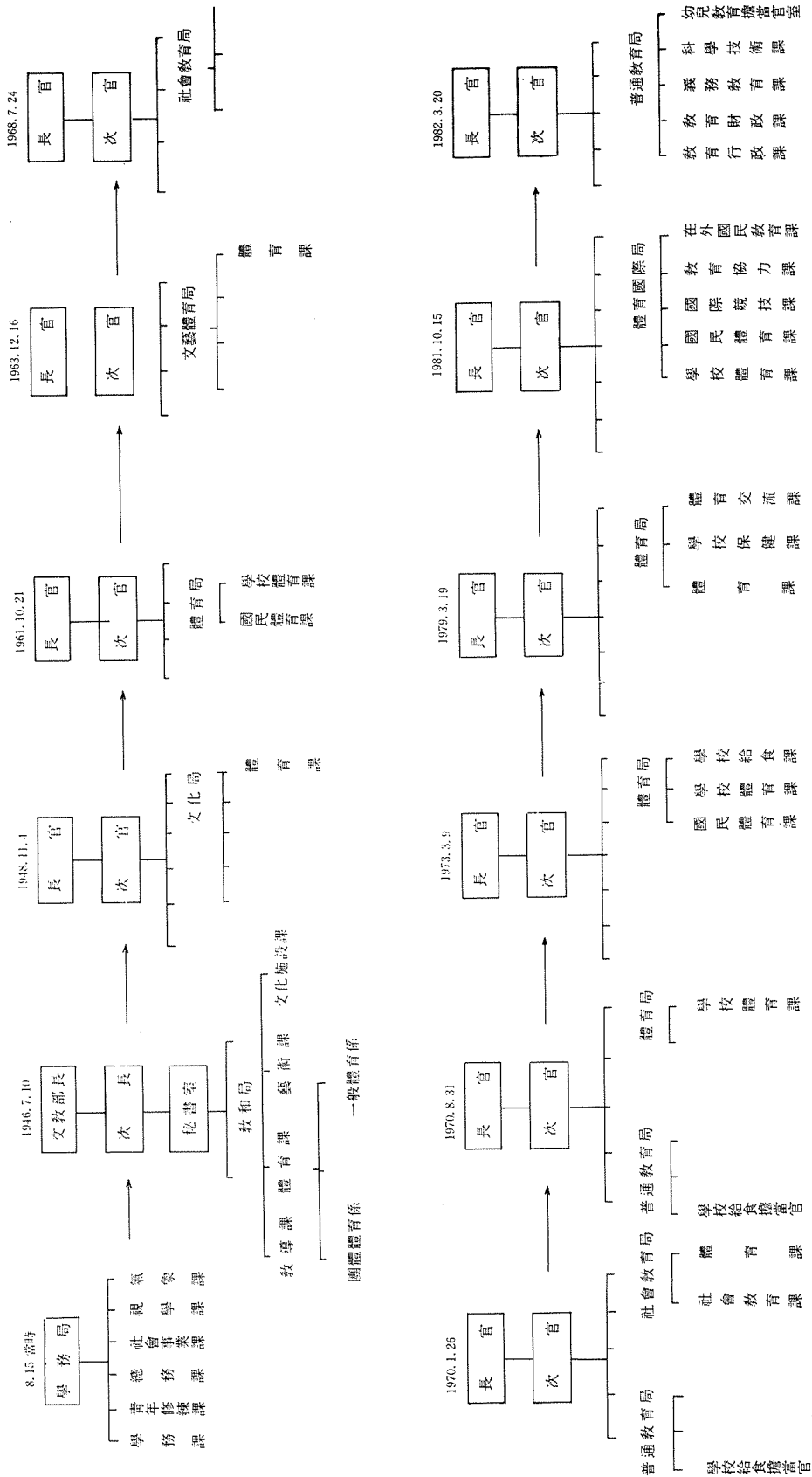
3) 學校保健人力

學校保健 專擔常勤 人力으로 保健行政家, 養護敎師, 營養士가 있으며 囑託保健專門人力으로는 學校醫(齒科校醫 包含) 學校藥師를 들 수 있다. 養護敎師는 1953年 敎育公務員法에 根據하여 制度가 始作된 以來로 學校에 常勤하는 保健專門人力으로서 學校保健의 中樞的役割을 擔當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學校營養士는 1977年 慶尙北道敎育委員會에서 日傭職으로 給食實施 學校에 配置하여 이듬해 1978년에는 常傭雜級職으로 全國給食學校에 任命되었다가 1979年 學校保健職制改編과 同時에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正規保健職公務員으로 任用되어 給食學校發展에 寄與하고 있으며 學校保健의 諸般行政業務를 擔當하는 專門人力인 保健行政家(保健職公務員)는 1972年 11月 처음으로 文敎部 傘下에 配置되어 學校保健의 기틀을 잡는데 貢獻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7年에 制定된 學校保健法과 1969年 制定된 學校保健法施行令에 의하면 養護敎師, 學校藥師, 學校醫(齒科校醫 包含)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學校保健管理指針에 나타난 것을 보면 學校藥師는 1975年에 學校醫는 1976年에 齒科醫는 1979年 부터 學校保健人力을 活用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79年을 기점으로 하여 學校保健專門人力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強化한 것을 알 수 있다(表 9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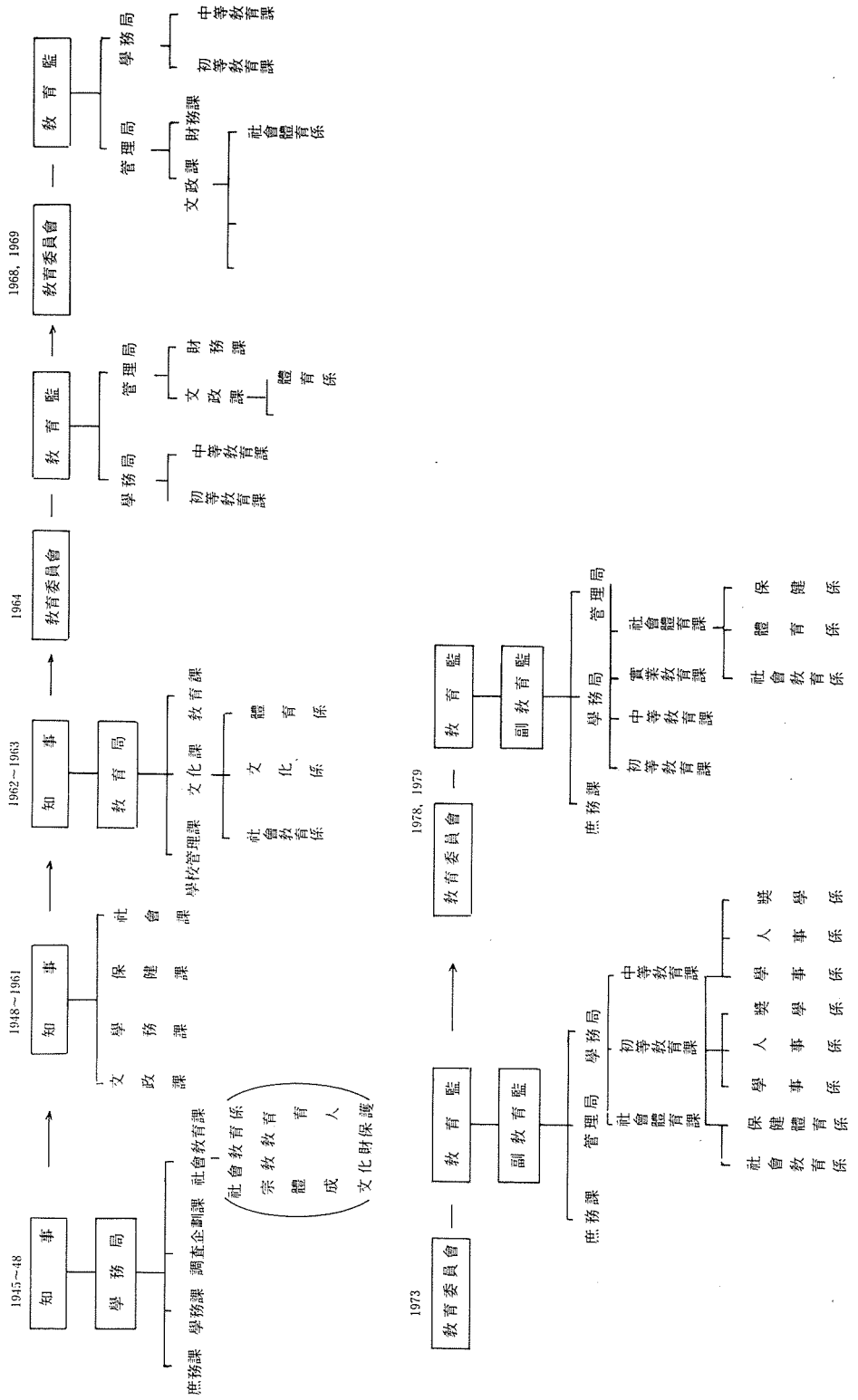
〈圖表 1〉

文教部之 學校保健 關係組織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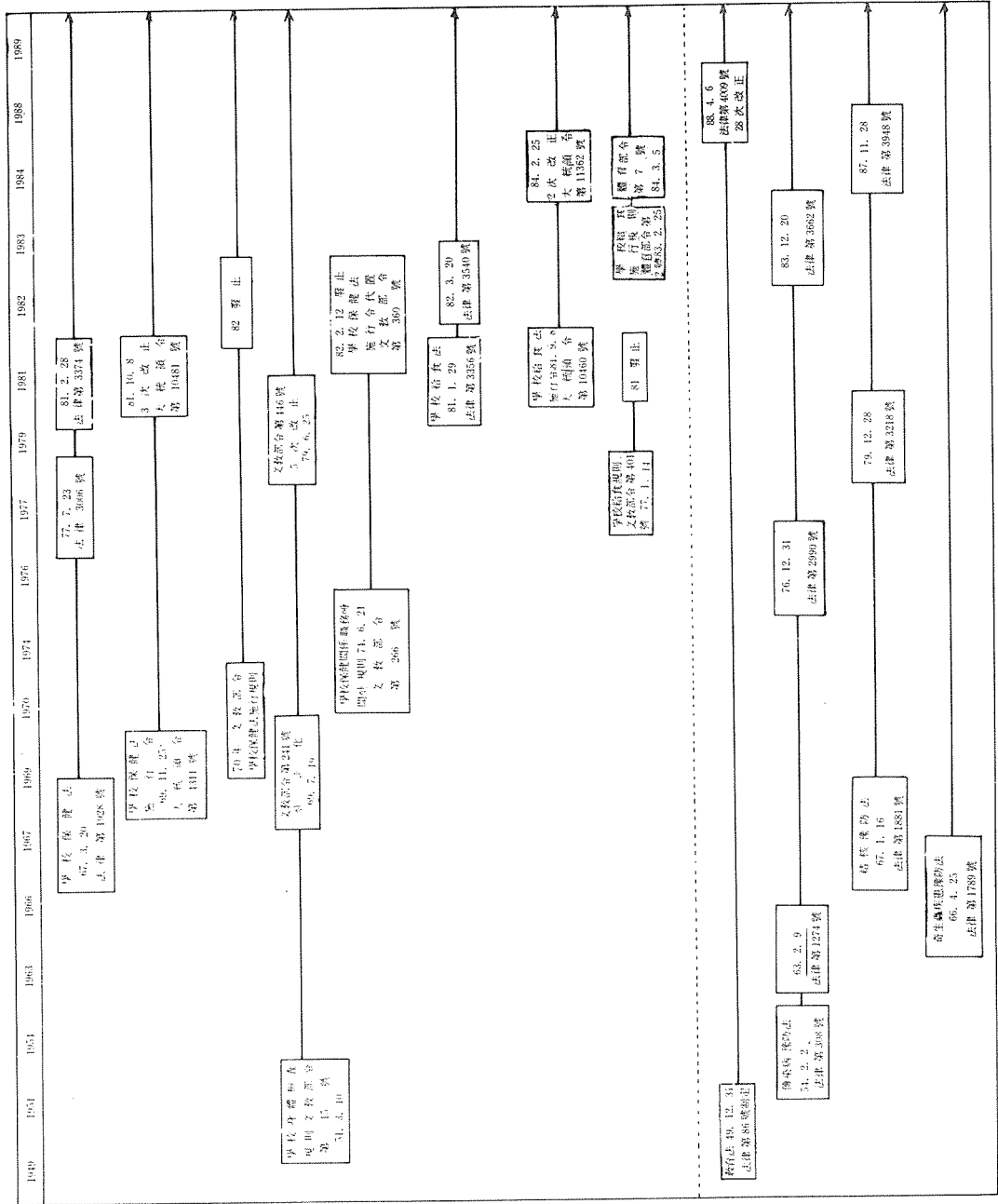
〈圖表 2〉

市・道教育委員會 學校保健關係 組織・改編



(圖表 3)

學校保健關係法の變遷



學 校 保 健 人 力

(表 9)

| 區分 \ 年度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 養護教師 | | | | | | | | | | | | | | | | | | |
| 學校藥師 | | | | | 活用 | | | | | | | | | | | | | | |
| 學校醫 | | | | | 活用 | | | | | | | | | | | | | | |
| 學校齒科醫 | | | | | | | | 活用 | | | | | | | | | | | |

4) 學校保健擔當者의 教育

學校保健擔當者는 養護教師, 養護兼職教師(養護教師業務를 代置하는 一般教師), 學校保健行政家, 學校營養士 들이다.

學校保健管理指針에서 살펴본 年道別 學校保健擔當者의 教育은 表 10과 같다.

養護教師의 教育은 1966년도 保健社會部 傘下 國立保健院에서 始作되어 1988년에는 國立保健院과 韓國敎員大學校에서 1989년에는 韓國敎員大學校에서 教育을 擔當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에는 文敎部傘下 中央教育研修院으로 移管된다.

養護兼職教師는 1977년부터 教育委員會 教育監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教育을 擔當해 왔으며 學校保健行政家의 教育은 1985年 國立保健院에서 始作되어 1989년에 中央教育研修院으로 移管되어 實施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表 10參照)

營養士의 教育은 1979年과 1980年 4日間씩 文敎部가 直接 主管하여 實施하던 것을 1981年 農水産部傘下 農村營養改善研修院에서 6日間 實施하기 始作하여 1982년에는 4週間 1983년부터는 3週間씩 實施하여 왔으며 1989年 中央教育研修院으로 移管되어 實施하고 있다.

5) 學校保健關聯機構

學校保健關聯機構로 學校保健委員會 서울特別市 學校健康管理所 學校保健協會 등을 들 수 있다.

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保健法에 根據를 두고 文敎部次官을 委員長으로하는 諮問機關이었으나 1981年 政府의 各種委員會 整備時 廢止되어 現在까지 復活되지 않고 있는 狀態이다. 서울特別市 學校健康管理所는 1958年 서울特別市立 學校保健所 設置條例에 依據 開所한 것인데, 1968年 學校保健法 制定을 契機로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로 移管하여 學生의 健康管理, 保健教育, 學校保健研究, 學校環境衛生 指導등을 主要 事業內容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表 11參照).

이중에서 學生의 健康管理 事業을 살펴보면 寄生蟲檢査, 結核檢診, 口腔保健事業, 尿檢査, 血液檢査, 學生健康相談을 主要事業으로 하고 있다. 韓國學校保健協會는 1955年 12月 大韓學徒保健協會로 始作하여 1970年 4月 社團法人 韓國學校保健協會로 改稱하였다. 1965년부터 寄生蟲驅蟲事業을 1974年 까지 實施했고 1970년부터 學生血液型 檢査를, 1980年 부터는 學生尿檢査를 主要事業으로 하고 있으며 現在에 이르고 있다(表 12參照).

以上の 學校保健行政機構, 法, 人力, 學校保健關聯機構를 年度別로 學校保健事業支援이라는 側面에서 分析한 結果 1951年 學校身體檢査規則을 制定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各級學校에서는 身體檢査 및 各種檢査를 實施하여 왔다.

1953年 學校保健事業을 위하여 教育公務員法에

年度別 學校擔當者の 教育(研修)課程

〈表 10〉

| 區分 | 年度 | | 對象數 | 教育機關 | 期間 | 教育旅費 | 費用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 初等 | 中等 | | | | | | | | | | | | | | | | | | | | | | | | |
| 養護教 | 對象數 | 100 | 100 | 國立保健院 | | | | | | | | | | | | | | | | | | | | | | |
| | 教育旅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費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期間 | | | | | | | | | | | | | | | | | | | | | | | | | |
| 養護兼職教師 | 對象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教育旅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費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期間 | | | | | | | | | | | | | | | | | | | | | | | | | |
| 學校保健行政家 | 對象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教育旅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費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期間 | | | | | | | | | | | | | | | | | | | | | | | | | |

* 學校保健行政家：市道教委 市道區教育廳學校訓 勤務計三 6級以下 保健職 公務員(兼講師、給食學校營養士除外)三 學校保健業務擔當者

年度別 市立學校健康管理所 主要事業內容

〈表 11〉

| 區分 | 年度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
|----|----|---|----|----|----|----|----|----|----|----|----|----|----|----|----|----|----|----|----|--|
| | | 學生 核 腔 液 血 學 業 體 特 別 學 級 學 生 身 體 檢 查 優 秀 選 手 身 體 檢 查 成 人 病 檢 查 定 期 身 體 檢 查 精 神 健 康 相 談 學 生 教 育 師 教 育 支 援 (冊 子 發 刊) 學 校 保 健 實 態 調 查 學 生 本 體 格 檢 查 特 殊 兒 判 別 委 員 會 不 頁 檢 查 學 生 衛 生 指 導 示 範 給 食 校 衛 生 點 檢 煙 毒 消 毒 | | | | | | | | | | | | | | | | | | |

의한 養護教師 制度를 公式的으로 導入하고 이들을 常勤職員으로 學校에 配置하여 學校保健事業을 擔當함으로써 學校保健事業이 發展되는 契機가 되었다. 1955년에 韓國保健協會의 前身인 大韓學徒保健協會를 設立하고 1958년에는 서울特別市立健康管理所를 開設하여 各種學校保健事業에 關聯된 檢査를 支援하기 始作하였다.

1967년에 學校保健法을 1969년에 同施行令을 制定하여 學校保健事業目的, 範圍, 人力을 提示하여 學校保健事業 發展에 拍車를 加하고자 하였다. 이 法에서 學校保健專門人力 活用の 具體的인 方向을 提示하였다. 10년이 지난 1979年 文敎部에 學校保健課가 設置되어 學校保健事業을 1980년부터 發展의으로 이끌고 갔음을 歷歷히 알 수 있었다. 즉 1979年 學校保健課가 設置된 以來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管理事業強化는 勿論 保健敎育 環境衛生事業이 強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은 文敎부와 各市道敎育委員會가 學校保健機構를 통하여 學校保健關係法에 의하여 學校保健管理基準과 같은 行政指針을 示達하면 養護敎師는 囑託校醫(齒科醫 包倉), 學校藥師, 學校保健管理所, 學校保健協會등에게 要請하여 學生의 身體檢査 및 各種檢査를 所定의 手數料(國庫, 育成會經費등)에 의하여 實施하였다. 學校保健 行政支援中 文敎部 및 市道敎育委員會에 學校保健 行政機構가 設置됨으로써 學校保健事業 發展에 가장 큰 影響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3. 學校給食

學校給食이 學校保健에 重要한 部分임을 더 言及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1982年 3月 體育部의 設立과 同時에 學校給食事業이 體育部로 移管되었다는 것은 學校保健 혹은 體育을 理解하는 學者들은 納得이 가지 않는 部分임을 主張하고 있으나¹⁹⁾ 行政家의 常識線에서 쉽게 處理된 것 같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學校給食은 學生의 自己健康管理 能力向上을 위하여 除外될 수 없는 部分이므로 이를 學校保健

敎育課程에 包倉시켜야 한다는 主張과 함께 繼續的인 研究가 이어지고 있다.²⁰⁾²¹⁾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給食은 1972년부터 多樣한 食單으로 그 地域의 學校에 맞도록 開發되어감을 알 수 있으며 1977년부터 學校給食의 類型을 地域別로 區分 給食의 形態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의 學校給食 형태의 開發로 因하여 學生들의 自己의 食生活管理는 勿論 營養管理能力을 函養해야 하는 것이 學校給食의 目的이라면 이 모든 學校給食活動이 學校保健敎育課程에 收斂되어 學生의 食生活 및 營養管理能力 本位 敎育課程으로 開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學校給食은 敎育의 場인 文敎部에서 管轄하여 敎育의 脈絡에서 理解되고 開發되어야 할 時點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

年度別學校給食의 現況

〈表 13〉

| 財源 | 年度 |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
|---------|-------------|----------------|----|----|----|----|----|----|----|----|----|----|----|----|----|----|----|----|----|--|
| | 項目 | 內容 | | | | | | | | | | | | | | | | | | |
| 外 援 財 源 | 對 象 | 在籍學生에 대한比率 33% | | | | | | | | | | | | | | | | | | |
| | 內 容 | 粉乳分配 | | | | | | | | | | | | | | | | | | |
| | 無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保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自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自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示 範 校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自 活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自 活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一 般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一 般 給 食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島嶼僻地型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一般地域 極貧兒 | 對象 | | | | | | | | | | | | | | | | | | |
| 農漁村型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都市型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財源 | 年度 |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
|----------------------------|------------------|----|--|--|--|----|----|----|----|----|----|----|----|----|----|----|----|----|--|--|
| | 項目 | 對象 | | | | | | | | | | | | | | | | | | |
| 外國 政府 公庫 | 對 內 容 | 對象 | 552,016名 식량, 건방 週5回 | 528,200名 식량, 건방 週5回 | | | | | | | | | | | | | | | | |
| | | 內容 | 300,000名 糧食補助 週2回 | 170,000名 週2回 | | | | | | | | | | | | | | | | |
| | 無 給 保 給 | 對象 | 438,203名 식량 주2회이상 84,749名 牛乳週5回 | 554,600名 식량 주2회이상 97,500名 牛乳週5回 | | | | | | | | | | | | | | | | |
| | | 內容 | 都市 14,721名 牛乳補助週5回 | 都市 16,600名 牛乳補助週5回 | | | | | | | | | | | | | | | | |
| | 示 範 學 校 | 對象 | 農村 12,353名 糧食補助週5回 | 農村 17,200名 週5回 |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生產+調理+給食 農漁村 22校 主・副食週5回 | | | | | | | | | | | | | | | |
| | 自 給 給 食 | 對象 | | | 調理+給食 島嶼僻地 700校 都市 21校 主・副食週5回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島嶼僻地 159,000名 主食週5回 農村 650,000名 主・副食週2回 | | | | | | | | | | | | | | | |
| | 一 般 給 食 | 對象 | | | 希望者 786,000名 週2回 主・副食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318,000名 週2回 主・副食 週2回 主・副食 | | | | | | | | | | | | | | | |
| 島嶼僻地型 | 對 內 容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 | | | | | | | | | | | | | | |
| 一 般 地 域 貧 兒 | 對 內 容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 | | | | | | | | | | | | | | |
| 農 漁 村 型 | 對 內 容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 | | | | | | | | | | | | | | |
| 都 市 型 | 對 內 容 | 對象 | | | | | | | | | | | | | | | | | | |
| | | 內容 | | | | | | | | | | | | | | | | | | |

IV. 要約 및 結論

우리 나라 學校保健事業內容을 年次的으로 分析하고 이를 支援했던 學校保健行政을 把握함으로써 우리 나라 學校保健事業方向摸索을 目的으로 文敎部の 學校保健管理指針(基準), 學校保健關係法令, 各 市道敎育委員會保健歷史資料, 保健關係 研究物 등 各種 資料를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① 우리나라의 學校保健事業은 身體檢査 및 各種 病理檢査 爲主의 것으로 1951년부터 法制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檢査는 政府의 豫算과 學校育成會費로 學校醫, 齒科校醫, 學校健康管理所, 學校保健協會, 寄生蟲撲滅協會 (現在는 健康管理協會) 結核協會 등에서 實施하여 왔다.
- ② 學校保健敎育의 強化는 1979年 文敎部에 學校保健課가 設置되어 이를 計劃한 후 1980년부터 始作되어 學校保健事業에서 敎育의 重要性을 認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保健敎育이라는 名稱도 1979년까지는 安全敎育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1980년부터 變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保健敎育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他敎科와 分離한 獨立敎科目으로 開發普及 및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 ③ 環境衛生管理는 學校保健의 初期부터 關心을 部分的으로 表明한 記錄이 있으나 1977년부터 學校給水에 대하여 具體化하고 있으며 學校周邊 環境衛生淨化區域 管理에 있어서는 1979年 學校保健法 改正準備를 始作으로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管理에 關한 研究 및 環境衛生管理에 心血을 기울였으며 1981年 改正 學校保健法에 環境衛生淨化區域을 絶對淨化區域과 相對淨化區域으로 區分하고 淨化區域 안에서의 禁止行爲 및 施設도 學校保健施行規則에 明示하였던 것을 學校保健法 第6條에 明示함으로써 學校環境을 保護하겠다는 政府의 具體的인 努力이 나타났다.

- ④ 養護室管理設備는 1980년부터 養護室設置費를 確保 國庫에서 支援하고 있으며 文敎部가 1978年 標本學校 體格檢査 實施要領示達以後 傍觀되었던 身體檢査機構代替費가 1987년부터 消毒藥品費와 함께 國庫에서 支援하고 있다.
- ⑤ 學校保健行政機構는 1979年 文敎部 學校保健課가 誕生되어 學校保健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으나 그후 政府의 機構縮小課程에서 不過 2年 6個月만에 課가 廢止되어 縮小되었다가 1987年 1월에 “係” 水準으로 머물고 있는 狀態이다. 學校保健을 文敎部政策分野 에서 보다 重要하게 새롭게 認識하여 學校保健을 專擔하는 課를 두어 組織上 文敎部和 體育部가 二元化되게 運營하고 있는 學校給食分野도 文敎部에 一元化시켜 學校敎育과 連繫되는 學校保健事業으로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市道敎育委員會 組織은 1979年 保健係 設置以後 改編되지 않고 그대로 維持되어 學校保健이 退步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亦是 學校保健을 專擔하는 課로 昇格하여야 할 것이다.

學校保健 人力을 1979년부터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強化한 것을 알 수 있었다.

學校保健擔當者의 敎育은 學校保健行政家를 1985年부터 保健社會部 傘下 國立保健院에서 實施하던 것을 1989년부터 中央敎育研修院으로 移管 實施하고 있으며 養護敎師도 1966년부터 國立保健院에서 始作하여 實施하던 것을 1988年 文敎部傘下 韓國敎員大學校에 委託하여 實施하다가 1990년에는 中央敎育研修院으로 移管되며 營養士의 敎育도 1981년부터 農水産部 傘下 農村營養改善研修院에서 實施하던 것을 1989년부터 中央敎育研修院으로 移管하여 學校保健擔當者의 敎育을 文敎部傘下 中央敎育研修院으로 一元化하여 敎育에 主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研修生들에게서의 要求事項을 直接 收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⑥ 學校保健關聯機構인 韓國學校保健協會는 1955年 大韓學徒保健協會로 出發하여 1970年 지금의 名稱으로 改稱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向後 學校保健의 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는 學校保健에 대한 研究, 資料開發, 保給 및 學校保健擔當者의 研修도 할 수 있는 機能을 갖춘 後援機關으로 發展하여야 할 것이다.

學校健康管理所는 1985年 서울特別市立學校保健所로 改所하여 學校保健法定을 契機로 1968年에 서울市教育委員會로 移管되어 學生의 健康管理, 保健教育, 學校保健研究, 學校環境衛生指導 등을 主要事業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保健法에 根據를 둔 文教部의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唯一한 諮問機關이었으나 1981年 廢止된 以後 再構成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 政府의 委員會整備를 擔當한 總務處의 承認을 1988年에 받았으므로 復活하여 學校保健事業의 重要政策方向 등을 論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⑦ 學校保健教育을 充實히 遂行할 수 있는 養護教師를 養成하기 위해서는 現行 教育法을 改正 看護師로서 養護教師가 아닌 養護教師로만 活動할 수 있는 資格證 賦與와 看護系 大學의 教師養成方法 및 教科課程 改編도 있어야 할 時點이라고 判斷한다.

⑧ 教育大學과 師範系大學은 勿論 大學教育에서 教職科를 支援하는 學生들에게는 必히 學校保健教育科目을 履修토록 할 것이며, 醫科大學, 齒科大學, 藥學大學, 看護大學에서 學校保健教育을 必須로 履修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⑨ 學校給食은 우리나라 初期(1957年)부터 오늘 날까지 實施하면서 여러 가지의 形態로 多樣하게 發展하여 왔다. 그러나 現在는 學校給食이 學生의 食生活 및 營養管理能力 開發이라는 次元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文教部의 初·中·高學生의 保健教育課程의 一環으로 實施

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學校保健事業의 效率인 遂行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學校保健業務關係者의 資質向上과 專門性 함양 및 教育行政機關의 組織에 專擔部署의 設置가 따라야 함을 強調하는 바이다.